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압류금지물건에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추가 >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708호)

2024. 1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화 실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2
3. 관계기관 의견	9

I. 제안경위

제안자	제안일	회부일
김도읍의원 등 10인	2024. 8. 9.	2024. 8.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민법」상 재산에 해당되고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그러나 반려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사실상 가족에 가깝게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에서 반려동물을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의 반려동물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95조제17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현행 「민사집행법」 제195조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의 반려동물”을 추가하려는 것임.

<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개정안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 ----- -.
1. ~ 16. (생략)	1. ~ 16. (현행과 같음)
<u><신설></u>	<u>17.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의 반려동물</u>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반려동물은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

을 의미함. 최근 동물을 가축이 아닌 애호의 대상으로 보는 사회적 분위기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1인 또는 2인 가구 비율의 상승 등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바, 2023년 기준 전체 인구 중 28.2% 정도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¹⁾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²⁾ 반려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금지(제10조),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의 등록제(제73조~제80조) 등을 아울러 규정하고 있음.

한편 사람과 법인만을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에 따르면 동물은 권리의 객체로서,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은 ‘유체물(有體物)’인 물건, 그 중에서도 동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음.³⁾

1) 「국내 반려동물 양육비율, 2023년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 수의사신문 데일리벳

2)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7.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반려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한다.

3)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제99조(부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현행 「민사집행법」 제188조는 채무자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집행 방법의 하나로 동산의 압류를 규정⁴⁾하면서도, 제195조에서 채무자의 최저생활과 최소한의 품위와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압류금지 물건⁵⁾을 규정하고 있음.

압류금지 물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로 채무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들로, 채무자의 기본적 생활이나, 직업의 영위, 명예나 종교에 관련된 물건,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 있는 지식재산에 관한 물건, 신체보조기구, 재해의 방지나 보안에 관한 물건 등으로 구분됨.

-
- 4) 「민사집행법」 제188조(집행방법, 압류의 범위) ①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에 의하여 개시한다.
 ②압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적은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안에서 하여야 한다.
 ③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한다.
- 5) 「민사집행법」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포장·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8. 위패·영정·묘비, 그 밖에 상례·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9. 족보·집안의 역사적인 기록·사진첩, 그 밖에 선조승배에 필요한 물건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문패·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3. 채무자등이 학교·교회·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교리서·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15.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설비·경보기구·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반려동물은 동산으로서 현행법상 압류 대상에 포함되며(제188조), 예외적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으면 안 되는 가축(제195조제4호)과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새끼고기(제195조제5호)는 압류가 금지된다고 할 것이나, 일반적인 반려동물이 이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채무자는 현행법 제196조⁶⁾에 따라 법원에 반려동물의 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 취소 또는 압류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반려동물의 압류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항임.

반려동물은 사람과 일상을 함께하며 감정적 교감과 애정을 나누는 상대이며, 최근에는 동반자나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음. 특히 개나 고양이와 같이 높은 지능을 가진 동물의 경우 주인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반려동물을 물건과 동일하게 보아 압류하는 것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에게도 상당한 정서적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가혹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음.

따라서 반려동물을 압류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개정안은 반려동물

6) 「민사집행법」 제196조(압류금지 물건을 정하는 재판) ①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유체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도록 명하거나 제195조의 유체동산을 압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정이 있는 뒤에 그 이유가 소멸되거나 사정이 바뀐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결정을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법원은 제16조제2항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고, 감정과 지능을 가진 생명체로서의 반려동물을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것으로, 채무자의 최소한의 품위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현행법의 취지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압류가 금지되는 반려동물의 범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대부분의 반려동물은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고, 집행 실무상 압류 및 보관 등이 용이하지 않아 집행 우선순위라고 보기 어려우나,⁷⁾ 고가의 반려동물의 경우 채권만족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것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제약하는 것으로 볼 소지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압류금지제도는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집행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해 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압류금지대상은 필수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⁸⁾

이러한 이유로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캐나다 등에서는 동물 등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면서도 일정 가액 이상이나 고가의 동물에 대한 압류

7) 김상훈, 「강제집행에서의 반려동물의 보호-압류금지물 가능성을 중심으로」, 비교사법 23(3), 2016.8, pp. 1191-1222.

8) 김연 · 이권일, 「압류금지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연구」,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2019.

는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우리법과 유사한 일본 「민사집행법」의 경우에는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금지 규정이 없음.

< 동물의 압류금지 관련 해외 입법례 >

구분	규정 내용
오스트리아	- 민법상 동물은 물건이 아님 - 감정적 유대가 있는 가축으로서 양도 목적이 없는 가축은 그 가치가 750유로에 이르지 아니하면 압류할 수 없음(강제집행법 제250조제1항제4호)
독일	- 민법상 동물은 물건이 아님 - 동물에 대한 강제집행시 집행법원은 인간의 동물에 대한 책임을 고려하여야 함(민사소송법 제765a조제1항), - 가정 내 영리목적없이 기르는 동물은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이 동물에 대한 압류금지가 동물의 보호 및 채무자의 정당한 이익과 비교형량하여도 정당화될 수 없을 정도로 채권자에게 가혹한 경우에는 그 동물의 가치를 고려하여 압류를 허용(민사소송법 제811c조)
스위스	- 가정에서 소유나 영리 목적 없이 기르는 동물은 압류할 수 없음. 다만 고가인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음(강제집행법 제92조제1항제1a호.제3호)
프랑스	- 가축화된 반려동물과 경비용 동물은 압류금지
캐나다	- 채무자가 오직 반려동물로 기르는 가축의 경우 소정 이상의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압류할 수 없음
이스라엘	- 채무자의 가정이나 집 영역에 있고 상업적 성격의 업무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동물인 반려동물은 압류되지 아니함

자료: 김상훈, 「강제집행에서의 반려동물의 보호-압류금지물 가능성을 중심으로」, 비교사법 23(3), 2016.8, pp. 1191-1222.

둘째, 개정안은 압류금지 대상인 반려동물의 범위를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의 반려동물’로 규정하고 있어⁹⁾ 반려동물의 범위가 한정된다

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재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는 반려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로 한정하고 있는데, 실제 사람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종류는 이보다 훨씬 더 다양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열거된 반려동물만 압류금지 대상으로 하고 열거되지 않은 다른 반려동물은 압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음.

셋째, 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시행일만 규정하고 개정규정의 적용시점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 법 시행 전에 강제집행이 신청되었으나 압류 전인 사건¹⁰⁾에 대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할지 개정 규정을 적용할지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¹¹⁾.

9)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반려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한다.

10) 유체동산 강제집행 절차 관련 규정

「민사집행법」 제2조(집행실시자) 민사집행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한다.

제3조(집행법원) ①이 법에서 규정한 집행행위에 관한 법원의 처분이나 그 행위에 관한 법원의 협력사항을 관할하는 집행법원은 법률에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된다.

제4조(집행신청의 방식) 민사집행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9조(집행개시의 요건) ①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

제188조(집행방법, 압류의 범위) ①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에 의하여 개시한다.

제199조(압류물의 매각) 집행관은 압류를 실시한 뒤 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으로 압류물을 매각하여야 한다.

제218조(배당요구의 절차) (생략)

제222조(매각대금의 공탁) ①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고 매각허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한편, 압류금지 물건과 관련하여 같은 취지로 박희승의원이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348호)한 개정안이 우리 위원회에 현재 계류중이므로 함께 심사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압류금지 물건 >

김도읍의원안	박희승의원안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의 반려동물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의 반려동물 및 그 밖에 영리 목적을 위한 보유가 아 닌 동물

3. 관계기관 의견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집행현장에서 반려 동물인지 영리목적으로 키우는 동물인지 즉시 판단하기 어려워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 현행 「민사집행법」 제196조(압류금지 물건을 정하는 재판) 제1항¹²⁾에 따라 채무자가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취소를 신청

11) 참고규정

민사집행법

부 칙 <법률 제7358호, 2005. 1. 27.>

제2조 (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신청된 재산조회 사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사건·보전명령 사건·보전명령에 대한 이의 및 취소신청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보전명령이 종국판결로 선고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상소 또는 취소 신청이 이 법 시행 후에 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법률 제10539호, 2011. 4. 5.>

②(적용례) 제246조제1항제7호·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및 취소사건부터 적용한다.

12) 「민사집행법」 제196조(압류금지 물건을 정하는 재판) ①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유체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도록 명하거나 제195조의 유체동산을 압류하도록 명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점, 개정안은 반려동물의 종류를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의 반려동물로 한정적으로만 포섭하고 있는 문제도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법무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민법」상 물건의 개념,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의 범위, 반려동물의 소유가 채무를 면탈하는 용도로 악용될 여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061